

세계인권선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이 문서는 북한자유연합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자유롭게 인쇄 및 배포될 수 있다.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였다. 이 선언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임을 밝히고 있다. 선언문의 전문에는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언문이 발표된 지 61주년인 오늘, 북한자유연합은 김정일 체제 하의 북한 시민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공개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의 서른 조항을 모두 담은 이 문서를 발표한다. 김정일 체제는 선언문에서 언급된 인권의 결핍이 초래하는 “만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양심”이 격분되고, 이어 북한 시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행동으로 옮겨지길 소망한다.

아래는 세계인권선언의 서른 조항이 북한에 적용될 때 북한 체제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명시된 이 권리들을 다루고 있는지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서른 조항 중 어느 하나도 북한 주민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이 문서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것을 넘어서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한자유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문서가 북한 내부에 퍼져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들을 누리고 그들의 인권을 되찾게 하는 목적으로 본 문건을 배포한다.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성분에는 좋은 성분이 있고 나쁜 성분이 있다. 어떤 사람 성분의 좋고 나쁨의 정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노동당 간부 또는 안보 당국자에게만 공개된다. 성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좋은 성분에 속하는 집단은 전 국민의 25-30%다. “그 밑으로는 47 개의 수직적인 계층 구분이 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계층구분이 뚜렷한 사회일 것이다 [...] 북한 인구는 크게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은 비슷한 정도의 인원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상위 계층은 [...] 모든 특권을 지니고 있다. 노력만 한다면 이들 개개인은 쉽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 계층—보통사람—은 수직상승을 할 수 있는 운 좋은 기회가

생기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 반면, 대학교육이나 전문 직업에 대해서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다. 전국민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하위 계층—즉, '원하지 않는 자'들은 천민 계급으로 취급된다. 모든 사회적 진출, 군대, 고등 교육의 문은 그들 앞에 닫혀있다.

- 헬렌 루이스 헌터, *김일성의 북한*

“북한은 개인보다 대중을 우선시한다. 북한은 또한 혈통을 바탕으로 사람을 차별대우한다. 적대 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직접적인 차별을 받게 된다.”

-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현황조사, 2008*

“당국자들이 가하는 억압을 통해 주민들은 지속적인 공포에 짓눌려 살며, 주민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신고하도록 강요당한다. 당국은 폭넓은 감시망을 통해 주민들을 감시하며, 고위 당국자들조차 서로를 고발하도록 부추김을 받는다. 여러 해 동안 당국은 불신 문화를 키워왔으며 이와 같은 분리 정책이 가족과 지역단체에 스며들게 했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년 8월*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는 만연하다. 북한 헌법이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노동력 배분 시 여성 역시 비율대로 포함되긴 하지만, 여성이 당 또는 정부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는 드물다.”

- 카마로타, 크레이스, 윌리, 자르츠만, *북한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2007*

“국가 내 위계질서가 뚜렷하기 때문에 엘리트 계층은 매우 잘 산다. 반면 나머지 계층의 사람들은 고통받는다. 계층 분화에 따른 이와 같은 차별은 여러 계층들의 처지를 보면 알 수 있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년 8월*

“북한 당국자들은 식량을 경제 활동이 활발하거나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배분한다. 따라서 사회 취약 계층인 노숙자, 아이들, 노년층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 국제 엠네스티 미국지부, 1999 년 5 월 31 일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에서의 사생활 침해는 만연하다. ‘인민반’이라는 이웃 단위와 사회 단체들을 통해 주민들은 감시 당하고 당은 치안 유지를 한다.”

-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현황조사, 2008

“권리에 대한 악용과 남용이 연속되는 경악스러운 시스템 내에서 가난, 공포, 차별, 박해, 그리고 착취로부터의 자유라는 권리는 지속적으로 침해된다. 당국은 이에 대한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 년 10 월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 대한 뒷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온다. 그들은 중국 가족에게 팔려가거나 납치되어 중국 남성들의 아내 또는 정부가 된다. 굶주림과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 중 이와 같은 여성들은 중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옥으로 끌려가며, 그 중에는 매춘을 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한다. 게다가 감옥 간수들은 여성 수감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희생자들과 목격자들은 정치범 수용소나 구금시설에서 간수들이 여성 수감자들을 강간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차이를 무시한다. 보안 시설에서는 오로지 남성들만 여성을 심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뒷거래에 대해 심문할 시 보안 경찰은 종종 여성을 때리고 위협하며 학대한다. 여성 간수들은 감옥 시설에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 간수들이 여성 수감자를 감시한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들은 월경 기간에도 샤워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

- 카마로타, 크레이스, 윌리, 자르츠만, 2007, 북한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당국자들과 타 기관들은 국민을 여러 방법으로 착취한다. 제도적인 착취부터 지역단체 수준의 착취, 그리고 개인적인 착취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 년 8 월

“관리소(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정치적 범죄자로 인식된 사람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억압적인 분위기가 만연하며 연좌제를 통해 당사자의 삼대가 함께 형을 선고받는다. 강제 노동과 고의적인 식량 단축을 통해 구금 중 죽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며 이는 모든 감옥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으로부터 송부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심문 중 고문을 당한다. 이 중 임산부들은 강제적으로 낙태를 당하거나 유아 살해를 경험하게 된다.

- 데이비드 호크, 감춰진 수용소,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고문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다. 수용소에서는 식량 부족, 불결한 위생관리, 추운 온도, 강제 노동, 육체적 형벌 등 수없이 많은 권리 남용과 박탈이 자행된다. 감옥은 수감자들에게 지옥 같은 곳이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 년 8 월

“북한 체제는 늘상 고문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국가 정보 기관에서 심문할 때는 특히 심하다. 북한에서 고문 피해자들은 ◦ 의식불명 또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삼으로 두들겨 맞기, ◦ 전기 충격, ◦ 노출 상태로 버티기, ◦ 일어서거나 누울 수도 없는 아주 작은 방에 수감되기, ◦ 무릎 꿇고 움직이지 않기, 물고문, 얼굴이나 정강이를 소총 몸통으로 맞기, ◦ 손목으로 매달려있기, ◦ 동료 수감자로부터 강제적으로 맞기, ◦ 앉았다 일어섰다가 쓰러지거나 죽을 때까지 반복하기 ◦ 강제 낙태 및 유아살해 등을 경험한다.”

-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 부서, 국가인권보고서: 북한, 2005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의 법률 시스템은 개인의 권리는 다루지 않는다. 인민치안부는 종종 정치적 사건들을 부적절한 재판으로 집행하며 수감자들을 인민치안부가 아닌 국가안보부 로 보내져 처벌당한다.”

- 국회도서관, 연방 연구부: 북한 부문

“사실, 북한 변호사들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북한노동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 한국 통일 연구소, 북한인권백서, 2009

“북한의 형사법 체계는 법적 강제력을 통한 정당한 법 절차 하의 사전 영장 시스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정당한 법 절차는 증거 조사, 구금, 사건 조사관이나 공판 전 중재의원을 통한 압류 등을 포함한다.)

-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현황조사, 2008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은 계속적으로 일반 범죄와 정치 범죄를 철저히 구분하며 정치범들을 다른 잣대로 처벌하고 있다.”

“시민들은 공개 재판에 부쳐지지만, 공직자들과 당 직원들의 재판은 비밀로 부쳐진다.”

- 한국 통일 연구소, 북한인권백서, 2009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정당한 법 절차 또는 법적 보호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사람들이 (형사법을 포함한) 법적 절차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다. 법에 대해 안다고 할지라도, 모든 판결 및 지령, 당 정책, 그리고 “친애하는 영도자 (김정일)”는 법보다 우선시 된다.”

-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현황조사, 2008

“권력자들과 그 주변 조직들은 면책 특권을 남용한다. 최근 몇 년간의 입법기관 개혁에도 불구하고 법적 시스템의 쇄신은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하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 년 8 월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자의적 구속, 구금,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법 절차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 인권 파수대(Human Rights Watch), 2009 년 1 월

“유치소는 공식적인 감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구금되어 있으며 그곳 상황은 소름이 끼치도록 형편없다.”

- 국제 엠네스티, 1999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은 독립된 사법부가 없다.”

- 프리덤 하우스, 세계 자유 북한 보고서 2009

“사법 체계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독립적인 사법권, 고소인을 위한 변호사, 그리고 법적인 해결과 균형을 위한 재판관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다. 재판관, 변호사, 배심원들은 법률상으로는 존재하나 국가 권력에 모두 복종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공인된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한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 년 8 월

제 11 조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배심원 제도는 법원에서 일하는 두 사람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에서 열거된 죄들을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관의 역할은 피고인에게 압력을 가해 죄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데 있을 뿐, 결코 피고인을 옹호해주지 않는다.”

- 한국 통일 연구소, 북한인권백서, 2009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지난 10 월, 75 살의 한 북한 공장주가 총살당했다. 총살의 이유는 이 공장주가 가족배경을 표명하지 않았고, 사적인 자금을 공장에 투자했고, 자녀를 공장 관리자 자리에 앉혔고, 국제전화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 국제 엠네스티, 2008

“전단지나 비디오를 통해 북한 외부 정보를 돌리는 사람들은 공개처형을 당한다.”

- 한국 통일 연구소, 북한인권백서, 2009

제 13 조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움직임의 자유도 없고 강제 정착의 경우도 빈번하다. 식량, 주택, 그리고 보건의료가 비교적으로 나은 평양 출입도 단단히 제한되어있다.”

- 프리덤 하우스, 세계 자유 북한 보고서 2009

“북한정부는 국경수비대에게 탈북자들을 쏘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최근의 화폐개혁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2009 년 12 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노동수용소에서 최소 2 년 형을 선고한다.”

- 북한 형사법 제 233 조

“여행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움직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변함없다.”

- 한국 통일 연구소, 북한인권백서, 2008

“탈북자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권에 위반된다.”

- 인권 파수대(Human Rights Watch), 북한 보고서, 2007 년 3 월

제 14 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중국 정부는 굶주림과 종교적 및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 탈북한 주민들을 잡아 복송시킨다. 이는 1951 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반하는 행위다. 복송된 탈북자는 고문과 처형을 당하게 마련이다.”

- 미 의회 집행위원회, 중국 연간 보고서, 2006, 2007, 2008

“복송 당한 이들을 북한 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경찰서에서 심문을 받는다. 심문 후 이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지거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6 개월을 보낸다. 때때로 공무원 중에서도 북한으로 되돌아온 사람 중 종교 서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심한 노역을 동반한 장기 형을 살거나 처형당하기도 한다. 고향으로 보내진 이들은 이웃 주민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감시를 당한다. 한번 탈북한 사람들 중에는 다시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탈북자는 여러 차례 복송 당했고, 발각될 때마다 점차 심한 처벌이 가해졌다고 보고된다.”

- 국제 엠네스티, 2004

제 15 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가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서의 힘든 삶을 고발했던 여성은 결국 총살당했다.”

- 북한사회연구소, **북한의 오늘 (North Korea Today), 2008 년 1 월**

“변절, 타국에게 항복, 또는 국가 비밀 유출 시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죄로 최소한 5 년을 노동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는다. 심한 죄목일 경우, 노동수용소에서 중신형을 살며 재교육을 받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다.”

- 북한형사법 제 62 조

“2005 년 탈북한 J 씨의 딸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복송되었다. 북한에서 J 씨의 딸은 남한에서 자유를 찾기를 원했다는 죄로 맞아 숨졌다”.

- 자유 북한 방송, 2009 년 12 월

제 16 조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하에서만 성립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출생신분도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신분을 가진 남성들은 종을 집안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 외에는 사회계층을 극복하기 힘들다. 부정적 배경을 가진 경우 안전보위부가 개인사에 간섭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안전보위부에 의해 결혼할 기회를 열 번이나 거부당했다. 부정적인 부계 집안 배경을 가진 한 여성은 결혼조차도 할 수 없었다.”

- 한국 통일 연구소, **북한인권백서, 2009**

“북한시민들을 대부분 중매결혼을 받아들인다. 중매결혼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당국이 시민들의 개인적인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침을 보여준다.”

- 헬렌 루이스 헌터, *김일성의 북한*

제 17 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당국이 사적인 농작물 재배를 금지하기 위해 작은 밭의 일부들도 새로 등록시킨 것이 보고되었다. ‘가정 재배’는 일반 주민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남는 통로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식량과 원조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제한은 주민들의 궁핍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 년 8 월

제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은 북한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사실상 북한정부가 지하 종교 모임들을 더욱 강도 높게 탄압하고 있다는 보고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면, 비밀 종교조직에 속할 경우 투옥이나 고문, 사형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

- 미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북한 연간 보고서, 2009 년 5 월

“지하교회에 출석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된 사람들은 결국 사형을 당한다. 종교의 자유는 북한 헌법에는 보장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심하게 제한되어있다. 종교 행사를 공식·비공식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투옥, 고문이나 사형을 당했다는 보고들이 들어와 있다. 많은 기독교인은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있고, 그 곳 상황은 아주 어렵다.”

- 국제 엠네스티, 2005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반대도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결정에 반대의견을 가진 이들은 가중한 벌을 받으며 그 가족도 흔히 연계되어 처벌받는다.”

“국내 언론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외국 언론은 접근조차 제한되어있다. 보고에 따르면, 1990 년 중반 이후 기자 40 명 이상이 상급 공무원의 이름 철자를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재교육’을 받았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는 공영 방송만 제공된다.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국제 엠네스티, 2005

제 20 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현황조사, 2008

“집회의 자유란 없다. 당국이 설립한 단체 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위나 단체 교섭 등의 활동은 모두 불법이다.”

- 프리덤 하우스, 세계 자유 북한 보고서 2009

제 21 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오직 하나의 당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며, 2009 년에 전국적인 최고인민위원회 선거를 흉내내긴 했지만, 이러한 선거는 걸치레일 뿐이다. 선거인들은 유일당 체제에 따라 형식적으로 거수기 노릇을 할 뿐이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 년 8 월

“북한에는 선거민주주의가 없다. 1994 년 김일성 서거 이후로 그 아들 김정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김정일에게는 수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위원회의 회장으로써 국가를 통치한다. 국가안보위원회는 김일성을 영구 대통령직으로 임명한 1998 년 헌법개정안에서 국가최고기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북한의 국회, 즉 최고인민위원회는 5 년 임기를 가진 거수기역할 기관이다. 마지막 선거는 2003 년 8 월에 실시되었다. 구성원들은 불규칙적으로 집결하나, 집결하는 날 수가 한 해에 손에 꼽을 정도다. 그들은 지난 2003 년 9 월의 마지막 선거에서 김정일을 국가안보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모든 직책의 후보들은 이미 조선노동당과 다른 두 소수당에 의해 미리 선택된 사람들이며, 따라서 반대가 전혀 없다.”

- 프리덤 하우스, 세계 자유 북한 보고서 2009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만일 식량 수입을 유지하거나 다자적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등의 그럴듯한 정책이 있었다면, 정부는 이토록 심각한 기아와 식량난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신, 기아의 정점에 다다른 시기에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거부했고, 인도주의적 원조가 시작될 즈음에는 식량 무역량을 줄여버렸다. 원조를 통해 부족한 공급량을 보충하는 대신, 정부는 원조를 국제 수지 부양으로 간주하여 오히려 수입량을 줄이고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군사를 포함한 다른 분야로 돌렸다.”

- 굿주림과 인권: 기아의 정치학, 북-미 북한인권위원회

제 23 조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에서의 직업 선택은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국의 수요-공급 계획에 달려 있다.”

- 한국 통일 연구소, 북한인권백서, 2009

“국민들이 일터에 가더라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공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월급이나 식량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현황조사, 2008

“당국은 규칙적으로 국민들을 150 일씩 불러내어 ‘식량전’(집중적인 농사 노동)을 강요한다. 그러나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조차도 생산된 것을 나눠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2009년 10월 유엔 보고서

“그곳에는 사실상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조합은 체제 보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년 8월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민들은 ‘약간의 나태함이나 휴식은 없애버리고 혁명적인 기세로 노동해야 하며 언제나 긴장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는 북한 체제는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을 거의 마련해주지 않는다...”

북한의 학생들에게는 혼자 있거나 친구들과, 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매일 일정은 모두 계획되어 있다. 일주일에 30~40 시간은 수업을 듣고, 1~5 시간은 군사훈련을

받는다. 12~20 시간은 자발적 노동을 하며, 3~6 시간은 비판 모임을 갖는다. 그들은 삶에서 중요한 여가시간을 가질 여유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할지라도 과제를 하는데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

- 헬렌 루이스 헌터, **김일성의 북한**

“모순적인 것은, 국민들은 집단 선동에 의해 노동을 하도록 강요 받는데, 이 노동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권력자들을 위한 체제와 그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 년 8 월

제 25 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배고픔과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동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투명성이 결여되고 감시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량 원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WFP(UN World Food Program, 유엔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북한 주민 237 만 명 중 절반 가량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이며, 인구의 1/3 이상 (65 만 명)이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배분 시스템을 통해 인구의 70% 이상이 일차적으로 식량을 공급받는데, 벌써 2003년에는 개인당 319g 씩 배당하던 것을 2005년 3월에는 250g으로 감소시켰다. 도시 거주민들은 수입의 85%가량을 식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이들 가게는 사설시장에서 식량을 구하는데, 이 곳에서는 정부 운영 시스템보다 10 배에서 15 배나 높은 가격을 받는다.”

- 국제엠네스티, **세계식량기구 2005**

“병원 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 복지 체계는 심각하게 퇴화되고 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설사에 걸린 아이들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당국과 유엔이 조사했을 때보다 그 수가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영유아들의 영양부족과 질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비티트 문탈봄, 유엔 북한인권현황 특별보고자, 북한인권연례보고서, 2009 년 8 월

“2 세 이하의 아동 중 20%정도가 설사로 고생하는데, 그 원인은 오염된 물과 청결하지 못한 위생관리다. 어머니들의 1/3 정도가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며 이 비율은 2002 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 유니세프 북한보고서, 2006 년 11 월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000 명 중 47 명이고, 출산 시 모친사망률은 100,000 명 중 370 명이다. 남한의 영아사망률은 1000 명 중 4 명, 모친사망률은 100,000 명 중 14 명에 불과하다.”

- 유엔 인구 기구 2009 년 세계 인구 조사

“극단적인 비인간적 행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북한의 수용소에서 일어난다. 강제 낙태, 신생아 살해, 그리고 유아 살해가 당국의 지시에 의해 어머니들의 눈 앞에서 번번히 자행된다. 어머니가 탈북 후 다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경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거나 갓 태어난 신생아들마저도 ‘국가의 적’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태아들의 선천적인 유죄성에 대한 생각은 요독 수용소의 한 관리가 한 말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반 혁명적이고 인민의 적인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아이를 뱉 수 있느냐?” 고 말한 바 있다.”

- 국경 없는 인권, 2002 년 1 월 8 일, 북한 수용소에서의 유아살해 관행에 대한 보고서

“중국으로부터 강제로 송부된 임산부들은 중국인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강제 낙태를 경험하게 된다.”

- 자유 북한 방송, 2009 년 12 월

제 26 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교육을 받을 기회는 거의 주어져나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교실은 홍수로 인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교육의 질 역시 자료 부족과 외부세계와의 노출 부족으로 열악한 상태다.”

- 유니세프, 인도주의적 활동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북한, 2009

“아이들은 김일성과 국가,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들은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지가 김일성이며, 따라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배운다.”

- 헬렌 루이스 헌터, *김일성의 북한*

“아이들은 군사 혁명가로 자라나도록 교육받는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는 학생들을 부유층과 자본주의 계층, 그리고 착취 구조를 혐오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 브래들리 마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 아래에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은 북한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다. 북한의 주민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과 그의 아들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평생을 생활한다. 김씨 정권은 그 어떠한 독재주의 정권보다도 심각하다. 그들은 지속적인 최고 권력의 근원지다.”

“김씨 가문을 둘러싼 종교적 믿음은 개개인과 북한의 모든 지역에 퍼져있다. 학생들은 ‘노동당 주체사상의 10 대강령’을 외워야만 한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450,000 개의 김일성 혁명연구소 중 한 곳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지도를 받고, 영감을 얻고, 자기비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 미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

제 27 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의 문화는 ‘내용은 사회주의이나 형식은 민족주의’다. 즉, 대중에게 주입된 사상에 적합하지 않은 옛날 소설, 극, 음악, 시들은 손꼽힐 정도의 몇몇 전문가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도서관의 캐비닛에 잠겨 있다.”

- 브래들리 마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 아래에서*

“아무도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지성인들과 예술가들은 더욱 그렇다. 시민들은 매 주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모임을 갖는 반면, 북한의 최고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은 노동당

간부들이 특별히 감시한다... 예술가들과 배우들은 이러한 상호 비판모임에 이틀에 한번씩 참여하도록 한다.”

- 헬렌 루이스 헌터, *김일성의 북한*

“북한 과학자들 중 북한이 중국의 산업쓰레기 폐기장이라고 불평한 사람들은 모두 숙청되었다... 함흥기술연구소는 토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의 산업쓰레기로 인해 토질이 오염되었고, 이에 대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로 보낸 편지도 있었음을 밝혔다. 그러자 이 연구소는 해체되었고 연구원들은 모두 숙청되었다. ‘과학자들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당국에 바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였다.”

- 동아일보, 2009년 11월 26일자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정부의 인권 기록 사정은 매우 열악하며, 현 정권은 지속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강력히 규제하지만, 시민들은 정부를 교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비합법적인 처형, 실종, 자의적 구금, 그리고 정치범들에 대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보고된다. 감옥 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생명을 위협할 정도다. 고문도 자주 사용된다. 임산부들에게 강제 낙태를 시키거나 아이가 감옥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이기도 한다. 독립적인 사법권이 없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거부당하고 있으며 오로지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한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노동자 권리 역시 제한하고 있다. 북송된 난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한 보고도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 국경선을 넘는 난민들 중 여성들과 소녀들을 팔아 넘기는 상인들에 대한 보고도 많다.”

- 미 국무부, 2008 인권보고서: 북한, 2009년 2월 25일

제 29 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공식적인 언급이 없이도 그들 자신의 성분(계층 배경)에 대해 알고 있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즉, 중·고등학교의 졸업, 대학의 입학 여부, 군대에서의 입영 여부, 노동당으로의 입당 여부, 결혼의 허가 여부, 일거리 배당, 도시 외곽으로의 거주 이전, 그리고 공동농장의 참가 여부 등—마다 그 사람의 성분이 좋고 나쁜가가 확연히 드러난다. 성분이 얼마나 좋고 나쁜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에 나타나는 세밀한 차이들로 인해 더욱 드러난다. 이 체제는 동기, 포부, 성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층과 비특권층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 헬렌 루이스 헌터, *김일성의 북한*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우리는 인권에 대해 외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뿐 아니라 모두의 북한에 대한 행동 강령에서 첫째 항목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믿음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북한 인권이다.”

- 수잔 솔티, *북한 자유의 날 서울평화상 수상자 연설문*

이외의 자료는 북한자유연합 nkfreedom.org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